

##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오산시의회의장

###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인수 의원 발의]

#### 1. 제안이유

- 2009. 5. 14. 전부개정 이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여러 차례 개정됨에 따라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위임규정에 맞게 변경하고, 오산 문화스포츠센터 개관과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사용료 등을 현재의 환경에 맞도록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에 편리를 제공하고 아울러,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일반적인 용어 사용과 유사해 규정할 실익이 없는 조항을 정비하고 “시설의 사용”을 “개인사용”과 “전용사용”으로 세분화함(안 제2조).
- 나.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체육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사용의 우선순위, 장애인에 대한 사용의 우선순위 특례, 사용의 취소 및 정지 등의 내용을 보완 및 신설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라.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을 오전, 오후, 야간 체계로 구분하던 것을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고 사용시간의 산정기준을 세분화함(안 제8조).
- 마. 체육시설의 초과사용료 납부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 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및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사용료 감면규정을 정비함(안 제10조).
- 사. 사용자의 사용신청 취소, 천재지변 등 반환기준을 정비함(안 제11조).
- 아. 관람권 발행 및 관람권 수입금액 규정을 정비함(안 제12조).
- 자. 체육시설 사용 시 사용자의 책임과 설비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 차. 체육시설의 운영·관리의 위탁에 관해 규정함(안 제16조).
- 카. 체육시설 개방 및 개방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7조).
- 타. 사용료 현실화 및 1회 사용시간 변경(2시간 단위)에 따른 사용료를 조정하고 오산 문화스포츠센터 개관에 따른 사용료 항목을 추가함(안 별표).

### 3. 조례안 : 붙임

###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년 8월 31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23, · 팩 스 : 031)375-2875
  - 전자메일 : pk1121@korea.kr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 의 건 | 비 고 |
|--------|---------|----|-----|-----|
|        | 찬성      | 반대 |     |     |
|        |         |    |     |     |

#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인수 의원 발의)

|          |         |
|----------|---------|
| 의안<br>번호 | 제8-570호 |
|----------|---------|

발의년월일 : 2021년 8월 24일

발 의 의 원 : 장인수 의원

찬 성 의 원 : 김영희, 김명철, 이상복,  
성길용, 이성혁, 한은경 의원

## □ 제안이유

- 2009. 5. 14. 전부개정 이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여러 차례 개정됨에 따라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위임규정에 맞게 변경하고, 오산 문화스포츠센터 개관과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사용료 등을 현재의 환경에 맞도록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에 편리를 제공하고 아울러,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가. 일반적인 용어 사용과 유사해 규정할 실익이 없는 조항을 정비하고 “시설의 사용”을 “개인사용”과 “전용사용”으로 세분화함(안 제2조).
- 나.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체육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사용의 우선순위, 장애인에 대한 사용의 우선순위 특례, 사용의 취소 및 정지 등의 내용을 보완 및 신설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라.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을 오전, 오후, 야간 체계로 구분하던 것을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고 사용시간의 산정기준을 세분화함(안 제8조).

- 마. 체육시설의 초과사용료 납부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 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및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사용료 감면규정을 정비함(안 제10조).
- 사. 사용자의 사용신청 취소, 천재지변 등 반환기준을 정비함(안 제11조).
- 아. 관람권 발행 및 관람권 수입금액 규정을 정비함(안 제12조).
- 자. 체육시설 사용 시 사용자의 책임과 설비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 차. 체육시설의 운영·관리의 위탁에 관해 규정함(안 제16조).
- 카. 체육시설 개방 및 개방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7조).
- 타. 사용료 현실화 및 1회 사용시간 변경(2시간 단위)에 따른 사용료를 조정하고 오산 문화스포츠센터 개관에 따른 사용료 항목을 추가함(안 별표).

## □ 참고사항

### ○ 관계법령발췌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 현행조례(전문) :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오산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따른 부속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개인사용”이란 개인이 일정기간 단일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

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사용제한 여부, 사용료와 사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시설의 개인사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사용신청 및 허가를 대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체육·문화교실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회원모집을 하거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사용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체육·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 및 행사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4. 오산시에 소재지를 둔 직장인 및 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5.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관람, 전시 행사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사용의 우선순위 특례)** 시장은 오산시장애인체육회(가맹단체를 포함한다),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 등이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사용의 취소 및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신청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자의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시간 안에 경기가 끝나지 아니하거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주간 : 06:00~18:00
2. 야간 : 18:00~22:00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신청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신청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나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절적, 상황적 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일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해서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체육시설 사용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6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10일 이내에 전 월분 사용료를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용  
사용료를 감면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전부  
면제
2. 영 제4조의2제2호에 따른 행사 : 80퍼센트 감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경
  - 가. 영 제4조의2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사 및 활동
  - 나.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영유아 및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위한 행사
  - 다. 오산시체육회 또는 오산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강습프로그램
  - 라.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스  
포츠클럽의 유·청소년대상 훈련·경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인사용료를 감경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경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  
당하는 사람
  -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  
조에 해당하는 사람
  -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0퍼센트 감경
  -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 나.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족
- 3.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의 경우 : 10퍼센트 감경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퍼센트 감경
  - 가. 「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
  - 나.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 다.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의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높은 감면을 한 가지만 적용하며,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 1. 사용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 가. 사용 20일 전까지 : 사용료 전액 반환
  - 나. 사용 10일 전까지 : 사용료의 80퍼센트 반환
  - 다. 사용 전일까지 :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
-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 ② 그 밖에 사용료의 반환에 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2조(관람권)** ①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관람권(입장권,

초대권 등을 포함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용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료 외에 관람권 수입총액의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총액이 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체육경기 및 체육행사 : 관람권 수입총액의 10퍼센트
2. 프로경기 및 일반행사 : 관람권 수입총액의 15퍼센트

**제13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분실·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제14조(사용자의 시설물 및 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5조(체육지도자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이용 및 경기규칙 안내 등 체육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6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시장은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시설의 개방 등)** ① 시장은 시민에게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와 오산시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설별 사용 기간·시간 및 사용수칙
2. 시설별 사용료

### 3.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② 시장은 경기대회 개최 또는 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산시 누리집 등을 통해 미리 공고해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된 것으로 본다.

[별표]

## 체육시설 사용료(제9조 관련)

### 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단위 : 원)

| 시 설 구 분             | 사용구분 | 체육경기    |         | 체육경기 외 행사 |           |
|---------------------|------|---------|---------|-----------|-----------|
|                     |      | 평 일     | 토 · 공휴일 | 평 일       | 토 · 공휴일   |
| 종합운동장               | 주 간  | 40,000  | 50,000  | 60,000    | 80,000    |
|                     | 야 간  | 50,000  | 70,000  | 120,000   | 150,000   |
| 인조잔디구장              | 주 간  | 30,000  | 40,000  | 40,000    | 60,000    |
|                     | 야 간  | 40,000  | 50,000  | 70,000    | 90,000    |
| 대체육관<br>(2,000㎡ 이상) | 주 간  | 70,000  | 90,000  | 150,000   | 200,000   |
|                     | 야 간  | 90,000  | 120,000 | 200,000   | 250,000   |
| 소체육관<br>(2,000㎡ 미만) | 주 간  | 25,000  | 30,000  | 50,000    | 60,000    |
|                     | 야 간  | 40,000  | 60,000  | 100,000   | 120,000   |
| 수영장                 | 주 간  | 400,000 | 600,000 | 800,000   | 1,000,000 |
|                     | 야 간  | 600,000 | 800,000 | 1,000,000 | 1,200,000 |
| 인라인스케이트장            | 주 간  | 20,000  | 30,000  |           |           |
|                     | 야 간  | 30,000  | 40,000  |           |           |
| 테니스장<br>(면 당)       | 주 간  | 10,000  | 15,000  |           |           |
|                     | 야 간  | 15,000  | 20,000  |           |           |
| 풋 살 장<br>(인조잔디,면당)  | 주 간  | 15,000  | 15,000  |           |           |
|                     | 야 간  | 20,000  | 20,000  |           |           |
| 다목적실                | 주 간  | 50,000  | 70,000  | 50,000    | 70,000    |
|                     | 야 간  | 70,000  | 90,000  | 70,000    | 90,000    |
|                     | 전 시  |         |         | 70,000    | 100,000   |
| 문화강의실               | 주 간  |         |         | 15,000    | 20,000    |
|                     | 야 간  |         |         | 20,000    | 30,000    |

|     |                                                                                                                                                                                                   |
|-----|---------------------------------------------------------------------------------------------------------------------------------------------------------------------------------------------------|
| 비 고 | 1. 인조잔디구장은 오산스포츠센터 보조축구장, 죽미체육공원 다목적구장을 포함한다.<br>2. 1회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수영장은 1회 4시간 기준)<br>3. 시간 초과시 초과 시간당 20/100을 가산한다.<br>4.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부과한다.<br>5. 다목적실(오산문화스포츠센터) 전시의 경우 1일(운영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

### 1-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오산문화스포츠센터 분할사용)

(단위 : 원)

| 시 설 구 분          |       | 사용구분                                                                                | 체육경기   |         | 체육경기 외 행사 |         |
|------------------|-------|-------------------------------------------------------------------------------------|--------|---------|-----------|---------|
|                  |       |                                                                                     | 평 일    | 토 · 공휴일 | 평 일       | 토 · 공휴일 |
| 대<br>체<br>육<br>관 | 농구장   | 주 간                                                                                 | 20,000 | 30,000  |           |         |
|                  |       | 야 간                                                                                 | 30,000 | 40,000  |           |         |
|                  | 배드민턴장 | 주 간                                                                                 | 15,000 | 20,000  |           |         |
|                  |       | 야 간                                                                                 | 20,000 | 30,000  |           |         |
|                  | 탁구장   | 주 간                                                                                 | 10,000 | 15,000  |           |         |
|                  |       | 야 간                                                                                 | 15,000 | 20,000  |           |         |
| 다목적실             |       | 주 간                                                                                 |        |         | 30,000    | 40,000  |
|                  |       | 야 간                                                                                 |        |         | 40,000    | 50,000  |
| 비 고              |       | 1. 1회(면)당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br>2. 시간 초과시 초과 시간당 20/100을 가산한다.<br>3.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부과한다. |        |         |           |         |

## 2. 체육시설 개인사용료

(단위 : 원)

| 이용시설         | 구 분               | 이용기준                 |                                               | 비 고                                                                                                                  |
|--------------|-------------------|----------------------|-----------------------------------------------|----------------------------------------------------------------------------------------------------------------------|
|              |                   | 1일이용                 | 월이용료                                          |                                                                                                                      |
| 수영장          | 어 른               | 3,500                | 주3회강습 66,000<br>주2회강습 55,000<br>자유정기 55,000   | ○ 회원은 1개월기준<br>-1일 1회<br>○ 주5일 이용(월~금)<br>-토,일요일:자유수영<br>(입장권 구입)<br>○ 어린이 평일자유수영<br>불가<br>○ 단체는 20명이상<br>(20퍼센트 할인) |
|              | 군 인<br>청소년        | 3,000                | 주3회강습 55,000<br>주2회강습 44,000<br>자유정기 44,000   |                                                                                                                      |
|              | 경로자               | 2,500                | 주3회강습 44,000<br>주2회강습 33,000<br>자유정기 33,000   |                                                                                                                      |
|              | 어린이               | 2,500                | 주3회강습 33,000<br>주2회강습 22,000                  |                                                                                                                      |
| 체력단련장        | 어 른<br>군 인        | 3,000                | 44,000                                        | ○1회 2시간                                                                                                              |
|              | 청소년<br>경로자        | 2,500                | 33,000                                        |                                                                                                                      |
| 인공암벽장        | 어 른<br>청소년<br>어린이 | 4,000                | -                                             | ○1회 4시간<br>○ 단체는 20명이상<br>(20퍼센트 할인)                                                                                 |
| 골프연습장        | 어 른<br>군 인<br>경로자 | 9,000                | 주3회강습 180,000<br>주2회강습 120,000<br>자유정기 95,000 | ○1회 1시간<br>○ 강습:최대4명<br>-1인 15분 개인강습                                                                                 |
|              | 청소년<br>어린이        | 7,000                | 주3회강습 150,000<br>주2회강습 100,000<br>자유정기 75,000 |                                                                                                                      |
| 테니스장         | 어 른               | 주간 1,500<br>야간 2,000 | 25,000                                        | ○1회 1시간                                                                                                              |
|              | 경로자<br>어린이        | 주간 750<br>야간 1,000   | 12,500                                        |                                                                                                                      |
| 인라인<br>스케이트장 | 어 른<br>군 인        | 주간 1,500<br>야간 2,000 | 15,000                                        | ○1일 1회<br>○ 단체는 20명이상<br>(20퍼센트 할인)                                                                                  |
|              | 청소년               | 주간 1,000<br>야간 1,000 | 10,000                                        |                                                                                                                      |
|              | 경로자<br>어린이        | 주간 500<br>야간 1,000   | 5,000                                         |                                                                                                                      |

|                            |                                                                                                                                                                                  |   |                |              |
|----------------------------|----------------------------------------------------------------------------------------------------------------------------------------------------------------------------------|---|----------------|--------------|
| 프로그램<br>(생활체육교실<br>문화강좌교실) | 어른기준                                                                                                                                                                             | - | 15,000~120,000 | ○과목당(1개월) 기준 |
| 공통사항                       | ○어린이 : 12세이하인 사람<br>○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br>○군 인 :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사람으로 정복을 착용한<br>하사 이하의 군인 및 전환복무자<br>○어 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br>○경로자 : 65세 이상인 사람           |   |                |              |
| 비 고                        | 1. 이용시간과 이용횟수에 따라 이용료 기준 범위 안에서<br>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br>2. 이용료를 책정할 경우 인근지역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유사한<br>프로그램 이용료 등을 감안한다.<br>3. 감면대상자의 경우 본인의 이용료만 감면되며, 교재·재료비는<br>감면하지 아니한다. |   |                |              |



### 3.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구 분                                                                                                                                                                                   |               | 사용기준 | 사 용 료   | 비 고                 |
|---------------------------------------------------------------------------------------------------------------------------------------------------------------------------------------|---------------|------|---------|---------------------|
| 라 시<br>( 조 명 탑 )                                                                                                                                                                      | 이 트 설         | 1회   | 50,000  | 종합운동장               |
|                                                                                                                                                                                       |               | 1회   | 30,000  | 인조잔디구장              |
| 전 광 관                                                                                                                                                                                 |               | 1회   | 100,000 | 수영장                 |
| 무 시<br>대 설                                                                                                                                                                            | 무 대 조 명       | 1회   | 40,000  | 무대장치 작업 및 시설준비는 50% |
|                                                                                                                                                                                       | 기 본 무 대       | 1회   | 30,000  | 고정식·이동식 단상          |
|                                                                                                                                                                                       | 전 동 무 대       | 1회   | 50,000  | 무대아래 전동식 보조무대(대체육관) |
| 음 시<br>향 설                                                                                                                                                                            | 앰 프 사 용       | 1회   | 30,000  | 유선마이크(2개기본)         |
|                                                                                                                                                                                       | 무 선마이크        | 1채널  | 10,000  | 무선마이크 (핀마이크포함, 1개)  |
| 전 기 · 조 명                                                                                                                                                                             |               | 1회   | 30,000  | 대체육관                |
|                                                                                                                                                                                       |               |      | 20,000  | 소체육관                |
| 냉 · 난 방                                                                                                                                                                               |               | 1시간  | 40,000  | 대체육관,수영장            |
|                                                                                                                                                                                       |               |      | 20,000  | 소체육관,다목적실           |
|                                                                                                                                                                                       |               |      | 10,000  | 문화강의실               |
| 기 편 시<br>타 의 설                                                                                                                                                                        | 식 당           | 1일   | 30,000  | 종합운동장<br>인조잔디구장     |
|                                                                                                                                                                                       | 스코어보드 (소형LED) | 1회   | 20,000  | 이동식 또는 간이 점수표시기     |
|                                                                                                                                                                                       | 빔프로젝트         | 1회   | 20,000  | 영화상영시<br>사용료면제      |
|                                                                                                                                                                                       | 아 취 설 치       | 1일   | 20,000  |                     |
|                                                                                                                                                                                       | 현 수 막         | 1건   | 10,000  |                     |
|                                                                                                                                                                                       | 접 의 자         | 1개   | 200     | 이동식접의자 등            |
| 1. 1회란 1일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단, 1일은 전용사용허가 시간 이내임)<br>2. 운영·설치 인원은 사용자 측에서 준비하며, 사용종료 후 원상태로 회복한다.<br>3. 기타 명시되지 않은 부대시설 사용은 상기내용을 준용한다.<br>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을 제외하고는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하지 않는다. |               |      |         |                     |

#### 4. 상업사용료

(단위 : 원)

| 구 분                                  | 사용기준          | 사 용 료     |
|--------------------------------------|---------------|-----------|
| 영 화 촬 영                              | 주 간           | 100,000   |
|                                      | 야 간           | 150,000   |
| 애 드 별 료 등 이 와<br>유 사 한 부 양 광 고 물     | 1일 1개         | 10,000    |
| 선 전 또는 부 착 광 고 물<br>(10m×1m 진 열 기 준) | 1년간           | 500,000   |
|                                      | 5일 이내         | 100,000   |
|                                      | 1일 초과마다       | 10,000    |
| 프 로 그 램 선 전 책 자 판 매                  | 판매부수×1부당 가격   | 판매금액의 20% |
| 기 타 물 품 대 여 (판 매 대 여)                | (매출금액-원가)×판매량 | 판매이익의 20% |

#### 5. 중계방송료

(단위 : 원)

| 구 분            |                                                                                                            | TV 등<br>동영상 중계방송 | 라디오 등<br>음성중계방송 | ARS(전화) 또는<br>인터넷 문자서비스 |
|----------------|------------------------------------------------------------------------------------------------------------|------------------|-----------------|-------------------------|
| 체 육 경 기        | 국 제                                                                                                        | 100,000          | 50,000          | 10,000                  |
|                | 국 내                                                                                                        | 70,000           | 40,000          | 10,000                  |
| 체 육 이 외<br>행 사 | 국 제                                                                                                        | -                | -               | 20,000                  |
|                | 국 내                                                                                                        | 150,000          | 100,000         | 20,000                  |
| 비 고            | 1. 방송장비는 사용자 측에서 설치·운용한다<br>2. 중계방송은 1일 기준으로 하되 프로경기는 1경기(게임)을 기준으로 한다<br>3. TV 녹화, 라디오 녹음은 중계방송료의 50% 징수함 |                  |                 |                         |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다. 삭제 <2016. 8. 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현행조례]

###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 2009년 5월 14일 조례 제1026호  
(제명개정 포함)

개정 2010년 5월 10일 조례 제1100호

일부개정 2014년 5월 2일 조례 제1358호  
(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 2014년 12월 11일 조례 제1383호

일부개정 2016년 7월 19일 조례 제1504호

일부개정 2019년 4월 9일 조례 제1715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0년 9월 28일 조례 제183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오산시에서 건립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를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관람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어린이”란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7.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순경을 포함한다.
8. “어른”이란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이며, “경로자”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9.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0.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30명 이상이며 인솔자를 따라서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오산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행사 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용허가 신청서를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려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2. 11>

② 제1항에 따라 전용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려 할 때에는 사용과 관람권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어 사용일 2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계획이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

③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행사
5.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
6.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제4조의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① 시장은 오산시장애인체육회(가맹단체를 포함한다),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 등 장애인이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신청한 장애인이 2명 이상 경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2.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각종 체육경기·대회
3. 참여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경우
4. 참여하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본조신설 2020. 9. 28]

**제5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

**제6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시 간           |
|-----|---------------|
| 오 전 | 06:00 ~ 12:00 |
| 오 후 | 12:30 ~ 18:00 |
| 야 간 | 18:30 ~ 23:00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에서 별표 6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중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만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정산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용료 징수는 이 조례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관람료 징수 등)** ① 전용사용자는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 이 경우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권과 같은 금액으로 본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체육경기와 체육행사 : 관람권 수입총액의 100분의 10

2. 프로경기와 일반행사 : 관람권 수입총액의 100분의 15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행사 당일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종료 후 다음날 12:00까지 일괄 정산할 수 있다.

④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관람료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무료관람권은 무료관람권임을 구체적으로 밝히어 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발행한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정부·도 또는 오산시의 경조 등의 행사에 참석한 자

2. 경기(행사포함) 주최측 담당직원, 지도요원, 출전선수와 신문사, 통신사 및 방송국의 기자

3. 각급 학교 내 체육대회 개최 시 해당 학교 교사와 학생



4. 시장이 발행한 출입증을 휴대한 자
5. 전국체전, 국제경기 또는 국내 주요경기의 응원단

② 제1항의 입장료는 별표 7과 같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 2014. 12. 11, 2019. 4. 9>

1. 전액 감면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 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또는 행사
- 다. 8개팀 이상 참가하는 생활체육대회
- 라. 노인,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
- 마. 경기도 및 오산시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강화 훈련 또는 경기
-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해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경기 또는 행사
- 사. 사용자가 사용료보다 2배 이상의 금액을 오산시에 후원하거나 기부하는 경기 또는 행사

2. 100분의 10 감면

오산시 실내 수영장의 경우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월 회원 이용료

3. 100분의 5 감면

- 가. 「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그린카드로 이용료를 납부하거나 그린카드를 제시하는 월회원(중복할인 불가)
- 나.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다.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

**제11조(사용료 및 관람료의 반환)** ① 사용자 및 관람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용사용이나 상업적인 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가.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 전액
- 나. 사용개시 20일 전까지 : 100분의 80
- 다. 사용개시 10일 전까지 : 100분의 60
- 라. 사용개시 전일까지 : 100분의 50

2. 중계 방송료는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에 대하여 전액 반환

3.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와 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의 취소를 할 때에는 전액 반환

② 제1항의 각 호 외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나 사용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하였거나 쓰레기 등, 그 밖의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을 때에는 사용자가 즉시 원상회복 조치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 7. 19>

**제14조(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의 설치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원상회복에 대하여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제15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체육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적용 받는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무상위탁) 시설운영 결과 결산잉여금은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매표 및 검인)** ① 사용권 및 관람권은 해당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예매분은 예외로 한다.

② 사용권·관람권·초대권·임원증·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공간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개방하려 하는 체육시설에는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및 월간 주민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의 활용 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정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이미 체육시설을 위탁 승인 및 허가를 득하였거나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 부칙 <2010. 5. 10 조례 제1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4. 5. 2 조례 제1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 조례의 개정) ①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100분의 5 감면

「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그린카드로 이용료를 납부하거나 그린카드를 제시하는 월회원(중복할인 불가)

#### ② 및 ③ 생략

### 부칙 <2014. 12. 11 조례 제13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접수하는 사용허가 건부터 적용한다.

### 부칙 <2016. 7. 19 조례 제1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9. 4. 9 조례 제1715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

#### ⑥ 부터 ⑨ 까지 생략

### 부칙 <2020. 9. 28 조례 제1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전 용 사 용 료

(단위 : 원)

| 시 설 명                      | 사용구분                                                                                                                                                                                                            | 체육경기    |         | 체육경기 외 행사 |           |
|----------------------------|-----------------------------------------------------------------------------------------------------------------------------------------------------------------------------------------------------------------|---------|---------|-----------|-----------|
|                            |                                                                                                                                                                                                                 | 평 일     | 토.공휴일   | 평 일       | 토.공휴일     |
| 종 합 운 동 장                  | 오 전                                                                                                                                                                                                             | 90,000  | 120,000 | 120,000   | 180,000   |
|                            | 오 후                                                                                                                                                                                                             | 90,000  | 120,000 | 120,000   | 180,000   |
|                            | 야 간                                                                                                                                                                                                             | 90,000  | 120,000 | 200,000   | 250,000   |
| 다 목 적 구 장<br>(인 조 잔 디 구 장) | 오 전                                                                                                                                                                                                             | 60,000  | 90,000  | 90,000    | 120,000   |
|                            | 오 후                                                                                                                                                                                                             | 60,000  | 90,000  | 90,000    | 120,000   |
|                            | 야 간                                                                                                                                                                                                             | 60,000  | 90,000  | 120,000   | 150,000   |
| 시 민 회 관                    | 오 전                                                                                                                                                                                                             | 60,000  | 72,000  | 120,000   | 150,000   |
|                            | 오 후                                                                                                                                                                                                             | 60,000  | 72,000  | 120,000   | 150,000   |
|                            | 야 간                                                                                                                                                                                                             | 80,000  | 100,000 | 180,000   | 240,000   |
| 다 목 적 체 육 관                | 오 전                                                                                                                                                                                                             | 50,000  | 60,000  | 110,000   | 130,000   |
|                            | 오 후                                                                                                                                                                                                             | 50,000  | 60,000  | 110,000   | 130,000   |
|                            | 야 간                                                                                                                                                                                                             | 70,000  | 90,000  | 160,000   | 200,000   |
| 수 영 장                      | 주 간<br>(오전·오후)                                                                                                                                                                                                  | 400,000 | 600,000 | 800,000   | 1,000,000 |
|                            | 야 간                                                                                                                                                                                                             | 600,000 | 800,000 | 1,000,000 | 1,200,000 |
| 인라인스케이트장                   | 오 전                                                                                                                                                                                                             | 40,000  | 60,000  |           |           |
|                            | 오 후                                                                                                                                                                                                             | 40,000  | 60,000  |           |           |
|                            | 야 간                                                                                                                                                                                                             | 60,000  | 80,000  |           |           |
| 테 니 스 장<br>(면 당)           | 오 전                                                                                                                                                                                                             | 20,000  | 30,000  |           |           |
|                            | 오 후                                                                                                                                                                                                             | 20,000  | 30,000  |           |           |
|                            | 야 간                                                                                                                                                                                                             | 30,000  | 40,000  |           |           |
| 비 고                        | 1. 초과 사용료는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오전·오후는 해당 요금의 100분의 10, 야간은 해당 요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사용료로 부과·징수한다. 다만, 체육경기의 경우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동호회의 전용사용료는 시간당 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br>2.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br>3. 배드민턴장 사용료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에 준한다. |         |         |           |           |

[별표 2] <개정 2010. 5. 10>

## 체육시설 개인(단체) 사용료

### 가. 수영장

(단위 : 원)

| 시설명 | 구 분    |            | 기 준    | 사 용 료  | 비 고                                                                                                 |
|-----|--------|------------|--------|--------|-----------------------------------------------------------------------------------------------------|
| 수영장 | 개<br>인 | 어 른        | 1인 1회  | 3,000  | ○단체는 30명 이상으로 하<br>고 30퍼센트를 할인한다.<br>○회원은 1개월 기준<br>※주6일 이용<br>(월~토요일)<br>○일요일은 자유수영 운영<br>(입장권 구입) |
|     |        | 군 인<br>청소년 | ”      | 2,500  |                                                                                                     |
|     |        | 경로자<br>어린이 | ”      | 2,000  |                                                                                                     |
|     | 회<br>원 | 어 른        | 자유정기이용 | 50,000 |                                                                                                     |
|     |        |            | 주3회 강습 | 60,000 |                                                                                                     |
|     |        | 군 인<br>청소년 | 자유정기이용 | 40,000 |                                                                                                     |
|     |        |            | 주3회 강습 | 50,000 |                                                                                                     |
|     |        | 경로자<br>어린이 | 자유정기이용 | 30,000 |                                                                                                     |
|     |        |            | 주3회 강습 | 40,000 |                                                                                                     |

### 나. 테니스장

(단위 : 원)

| 구 분  | 단 위  | 사 용 료 |     |       | 비 고                                                                 |
|------|------|-------|-----|-------|---------------------------------------------------------------------|
| 테니스장 | 1시간당 | 평 일   | 주 간 | 1,500 | ○경로자 및 청소년 이하는 50퍼<br>센트 할인<br>○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br>○월 이용료는 25,000원 |
|      |      |       | 야 간 | 2,000 |                                                                     |
|      |      | 토.공휴일 | 주 간 | 1,500 |                                                                     |
|      |      |       | 야 간 | 2,000 |                                                                     |

다. 체력단련장

(단위 : 원)

| 구 분        | 단 위       | 사 용 구 분     |             | 사용료    | 비 고 |
|------------|-----------|-------------|-------------|--------|-----|
| 체 력<br>단련장 | 1명<br>2시간 | 일 반         |             | 2,000  |     |
|            |           | 청소년.어린이.경로자 |             | 1,500  |     |
|            |           | 월 회원제       | 일 반         | 40,000 |     |
|            |           |             | 청소년.어린이.경로자 | 30,000 |     |

라. 인라인스케이트장

(단위 : 원)

| 시 설 명          | 구 분              | 사 용 료 |       |        | 비 고                                                                                |
|----------------|------------------|-------|-------|--------|------------------------------------------------------------------------------------|
|                |                  | 주 간   | 야 간   | 정기이용권  |                                                                                    |
| 인 라 인<br>스케이트장 | 어 른              | 1,500 | 2,000 | 15,000 | ○1일 1회에 한함<br>○단체는 동일소속 20명 이상으로 하고 20퍼센트를 할인한다.<br>○정기이용권은 주.야간 구분 없이 1개월(30일) 기준 |
|                | 중.고등학생           | 1,000 | 1,000 | 10,000 |                                                                                    |
|                | 경로자 및<br>초등학생 이하 | 500   | 1,000 | 5,000  |                                                                                    |

마. 인공암벽장

(단위 : 원)

| 구 분   | 단 위   | 사 용 구 분    | 사 용 료 |       |
|-------|-------|------------|-------|-------|
|       |       |            | 개 인   | 단 체   |
| 인공암벽장 | 1명2시간 | 일반.청소년.어린이 | 1,500 | 1,000 |

[별표 3] <개정 2014. 12. 11>

##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구 분                                                                                                                                                                                                | 단위 및 수량           | 사 용 료                                                                             |
|----------------------------------------------------------------------------------------------------------------------------------------------------------------------------------------------------|-------------------|-----------------------------------------------------------------------------------|
| · 라이트시설(조명탑)                                                                                                                                                                                       |                   | 50,000(기본료)+(실전기사용료)                                                              |
| · 전광판                                                                                                                                                                                              |                   | 50,000(기본료)+(실전기사용료)<br>(다만, 영상부문을 포함하여 사용시 100,000원<br>추가징수, 녹화비 100,000원 별도 징수) |
| · 전기료                                                                                                                                                                                              | 1회                |                                                                                   |
|                                                                                                                                                                                                    | ①일반전기<br>(조명등 포함) | 30,000(기본료)+(실전기사용료)                                                              |
|                                                                                                                                                                                                    | ②30KW이상           | 50,000(기본료)+(실전기사용료)                                                              |
| · 냉 · 난방                                                                                                                                                                                           | 1회                | 50,000(기본료)+(실전기사용료+유류사용료)                                                        |
| · 음 향                                                                                                                                                                                              | 1회                | 30,000                                                                            |
| · 영 사                                                                                                                                                                                              | 1회                | 50,000                                                                            |
| · 조립식 단상                                                                                                                                                                                           | 1건                | 50,000                                                                            |
| · 아취설치                                                                                                                                                                                             | 1회                | 20,000                                                                            |
| · 현수막 게첨                                                                                                                                                                                           | 1건                | 10,000                                                                            |
| · 접의자                                                                                                                                                                                              | 1개                | 200                                                                               |
| · 식 당                                                                                                                                                                                              | 1회                | 30,000                                                                            |
| <p>비 고</p> <p>○ 시설의 구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회관(다목적체육관 포함) : 냉 · 난방, 영사, 라이트시설</li> <li>- 종합운동장(다목적구장 포함) : 라이트시설(조명탑), 전광판, 식당</li> <li>- 수영장 : 냉 · 난방, 라이트시설</li> </ul> |                   |                                                                                   |



[별표 4]

상 업 사 용 료

(단위 : 원)

| 구 분                                   | 기 준     | 금 액               |
|---------------------------------------|---------|-------------------|
| 영 화 촬 영                               | 주 간     | 100,000           |
|                                       | 야 간     | 150,000           |
| 에드벌룬 공의 게양에 의한 광고                     | 1일 1개   | 10,000            |
| 선전물(부착광고물 10m×1m이내 진열<br>전람 평방미터당)    | 1년간     | 500,000           |
|                                       | 5일 이내   | 100,000           |
|                                       | 1일 초과마다 | 10,000            |
| 프로그램 선전책자 판매                          | 판 매 량   | 판매액의 20퍼센트        |
| 기타 물품대여(판매대여)<br>※ (매출금액 - 원가) × 판매수량 | 판 매 량   | 실 판매 이익의<br>20퍼센트 |

[별표 5]

중 계 방 송 료

(단위 : 원)

| 구 분       |     | T V     | 라 디 오   |
|-----------|-----|---------|---------|
| 체 육 경 기   | 국 제 | 100,000 | 50,000  |
|           | 국 내 | 70,000  | 40,000  |
| 체 육 외 행 사 | 국 제 | -       | -       |
|           | 국 내 | 150,000 | 100,000 |

[별표 6]

수탁관리자 사용료(종합운동장, 시민회관)

| 구 분     | 사 용 료 액                                                                          |
|---------|----------------------------------------------------------------------------------|
| 일 부 사 용 | 재산평가액 × $\frac{\text{사용시설면적}}{\text{전체시설면적}} \times \frac{6}{100}$ 이상 연간 계약으로 함. |

[별표 7]

입장료(종합운동장, 시민회관)

(단위 : 원)

| 입 장 구 분     | 요 액   |     |
|-------------|-------|-----|
|             | 개 인   | 단 체 |
| 어 른         | 1,000 | 500 |
| 청 소 년 및 군 인 | 500   | 300 |
| 어 린 이       | 300   | 200 |
| 경 로 자       | 무 료   | -   |